

정관

사단법인 한국밤재배자협회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밤재배자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사무소 소재지) 협회의 주사무소는 충남 부여군 구룡면 흥수로 180에 두며, 필요에 따라 지회 및 지부별로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

제3조(목적) 협회는 회원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밤 수급조절 및 판매촉진 등 자조금사업을 추진하여 밤 생산 농업경영체의 소득증대와 밤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(사업)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
1. 밤 소비촉진 및 홍보, 자율적인 수급안정, 유통구조 개선, 수출활성화
2. 농산업자와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
3. 품질 및 생산성 향상,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과 조사·연구
4. 회비 또는 거출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
5.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위탁받는 사업
6. 밤에 관한 홍보 및 출판사업
7. 그 밖에 협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 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 ① 협회 회원은 $1,000m^2$ 이상 밤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(농업인, 농업법인)와 전년도 밤 취급액이 1억원 이상인 생산자단체로 한다. 다만, 협회의 정관에 찬동하고 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협회 가입을 희망할 경우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② 회원의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6조(회원의 가입) 회원자격이 있는 자가 협회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 신청서를 해당 지부나 협회에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, 해당 의무거출금 납부대상자는 당연가입 회원이며, 회원으로 가입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회원의 권리) ① 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
- ② 회원은 협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, 협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.

제8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.

1.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

2. 총회, 이사회 및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(이하 “관리위원회”라 한다)의 결의 사항 이행
3.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

제9조(회원의 자격상실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이후부터 의무거출금 납부대상자에게는 제1호 · 제2호 · 제5호 · 제6호 이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
2. 사망
3. 파산
4. 성년후견의 개시
5. 제명
6. 탈퇴
7. 과년도 회비 미납

제10조(제명) ① 협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
1.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2. 제8조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
- ② 제명대상이 되는 회원은 이사회 또는 총회에 참석하여 자기 변론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.

제11조(납입금 환불)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회원이 납부한 가입비, 회비 및 일체의 납입금은 협회에 귀속한다.

제 3 장 임원 및 사무국

제12조(임원)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(의장) 1인
2. 부회장(부의장) 1인
3. 이사 20인 이내
4. 감사 2인 이상 5인 이내

제13조(임원의 선임) ① 임원은 회원 중 총회(또는 대의원 중 대의원회)에서 대의원 선거규정을 준용하여 선출한다.

② 이사는 지회의 추천과 총회(또는 대의원회) 참석인원 중 과반수의 결의를 통해 선출할 수 있다.

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2. 미성년자
3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4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<삭제>

제14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(의장), 부회장(부의장), 이사, 감사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보궐 선거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②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15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(의장)은 협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(부의장)은 회장(의장)을 보좌하며, 회장(의장)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협회의 주요 업무를 의결한다.
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, 이사회 및 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산림청에 보고하는 일
4. 제3호에 따른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, 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, 관리위원회 또는 회장(의장), 관리위원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⑤ 회장(의장) 및 상근임원의 보수 또는 수당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
제16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 단, 임원이 회원자격을 상실하면,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임원에서 해임된다.

1.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2. 임원 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7조(임원의 보수) 임원은 무보수로 하되, 여비 등 협회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회장(의장) 및 상근임원은 제15조제5항에 따라 보수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8조(사무국) ① 협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③ 협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.

제 4 장 총 회

제19조(총회의 구성) ①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나,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대의원은 20명 이상 20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임기는 4년으로 한다. 다만, 제5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대표자(단체장)로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임기 중 대표자(단체장)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해당 생산자단체의 후임자가 잔여기간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③ 대의원 후보자의 자격·등록·선거 및 대의원의 선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대의원 선거규정으로 정한다.

제20조(총회의 의결사항과 정족수)

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정관과 총회(대의원회)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
2. 회비(임의 및 의무거출금)의 부과기준 및 납부면제의 기준
3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의 승인과 변경
4.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
5. 이사회, 관리위원회가 의결하여 부의한 사항
6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7. 법 제14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위원장, 과반수 위원의 선출 및 해임
8. 의무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감사
9.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며 제시한 사항
10.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
11. 그 밖에 회장(의장)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총회는 제2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재적 회원 또는 대의원 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의결할 수 있다.

③ 총회는 재적 회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회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회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정관의 제정과 변경
2. 의무자조금의 설치 및 폐지(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폐지되는 경우는 제외)
3. 의무거출금의 산정기준과 금액 및 한도
4. 해산

④ 회원 또는 대의원은 제21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,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러한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1조(총회 구분과 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(의장)이 소집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(의장)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다만, 재적회원 또는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나 관리위원회 위원장, 감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(의장)이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-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(의장)이 회의안건 · 일시 ·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(대의원회는 대의원)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2조(총회의 의결 제척사유)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3조(총회의 의사록) ① 총회를 개최하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(의장)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- ③ 회장(의장)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이사회

제24조 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(의장), 부회장(부의장)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제25조 (이사회의 구분과 소집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(의장)이 이를 소집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(의장)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회장(의장)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26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2. 제 규정의 제정 · 개정 · 폐지, 다만, 의무자조금 관련사항은 관리위원회가 제정 또는 개정
3. 사업계획 및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보통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
5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또는 총회에 불일 안건에 관한 사항
6.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7조(이사회 의결정족수)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처리 한다.

제28조(이사회 의결 제척사유)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29조 (이사회의 의사록)

- ① 이사회를 개최하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회장(의장)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- ③ 회장(의장)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6 장 관리위원회

제30조 (관리위원회의 구성) 관리위원회는 법 제14조에 따라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31조 (관리위원회의 소집)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 다만,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소집통지를 서면으로 위원 및 감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32조 (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의결사항) 관리위원회의 직무와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거출금 거출시점 및 납부일자의 결정
2. 거출금의 수납
3. 자조금 운용계획의 수립 · 변경과 결산 및 그 내용에 대한 총회 보고
4. 자조금의 운용, 관리 및 집행
5.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납기관의 지정
6. 거출금의 수납위탁 관련 수수료 결정
7. 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· 개정
8. 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 · 개정
9.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
10. 총회에서 위임하는 업무
11. 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사항
12. 그 밖의 자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

제33조 (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) 관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34조 (관리위원회의 의사록) ① 관리위원회를 개최하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 위원 2명이 이에 기명 날인한다.

③ 위원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.

제 7 장 재산과 회계

제35조 (재원) 협회의 재정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 의하여 충당한다.

1. 회비(의무 또는 임의거출금)
2. 관련업자의 지원금 또는 기부금
3. 정부의 보조금
4. 그 밖의 수익금

제36조 (재산의 구분) ①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 재산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와 같다.

② 기본재산은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협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.

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제37조 (재산의 관리)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협회가 매매, 증여,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협회의 재산으로 편입해야 한다.

③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④ 협회의 모든 재산에 대한 평가는 취득당시의 가액에 의한다.

제38조(회계연도) 본 협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로서 종료한다

제39조 (업무보고) ① 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, 사업실적 및 결산은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회장(의장)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·지출 예산서 1부
2.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·지출 결산서 1부
3.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
4.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1부

제40조 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, 감사결과를 이사회 또는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8 장 보칙

제41조 (해산)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며, 산림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협회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때
 2. 재적회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결의할 때
- ② 해산 시 남은재산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얻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 또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귀속하도록 한다.

제42조(정관변경)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43조(준용)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민법」과 「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,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
제 9 장 지 회

제44조(설치) 본 협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지역에 각 지회를 둘 수 있다.

제45조(운영) 각 지회는 협회의 정관과 회칙에 준하여 운영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금의 귀속) 시행일까지 적립된 기금은 협회 재산에 귀속한다.

제3조(기존 회원에 관한 경과조치) 시행일 전 기존 회원이나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준회원으로 본다.

제4조(임원 선출에 관한 경과조치) 의무자조금 설치 후 법에 따라 새로운 임원의 선출이 필요한 경우 시행일자 이전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의무자조금 설치 시까지로 한다.